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603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

피고A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2023. 12. 2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28. 접수 제47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9. 10. 15. 및 2021. 10.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1	2019. 10. 15.	D	567,000,000원	일반 자금대출	2029. 10. 16.	C은행
2	2021. 10. 15.	E	225,000,000원	2022. 10. 14. (2024. 10. 11.로 변경됨)		

2) B이 2024. 1. 16. C은행에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4. 4. 4. C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 691,814,334원(= 원금 678,600,000원 + 이자 13,214,3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2024. 6. 17. 기준으로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B으로부터 일부 회수한 금원,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687,204,923원(= 대위변제금 잔액 687,004,084원 + 대지급금 200,839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1) B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12. 28. 피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시점은 B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불과 20여일 전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피고와 B은 2018. 8. 7.경부터 고철 등의 거래를 계속 하여왔고, 계속적 거래를 위하여 피고가 B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선급금 중 일부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는 B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2)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B이 복수의 채무자 중 한 명인 피고에 대한 채무를 B의 유일한 부동산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스스로도 B이 피고에게 경기가 좋지 않고 일감이 줄었다면서 평소보다 적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기에 피고가 B에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피고는 B과 상당기간 거래를 해오며 B의 자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두영

별지